

제 1447 호
1989. 8. 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반 중 남
 전 화 : 731-6111 ~ 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 공 문 시 행
 - 물품관리진환소요조치 3
- ◎ 조 례
 - 제 2496 호 서울특별시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 제 2497 호 서울특별시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 제 2498 호 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동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 ◎ 예 규
 - 제 515 호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업무지침 (합동주택개발)중개정지침 6

(이면계속)

영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교육규칙

제 342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정원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42

◎ 교 시

제 385 호 :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노인점)설치시행령가 44
제 393 호 : 서울특별시우물문화재지정 45
제 397 호 :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 46

◎ 공 고

제 655 호 : 체인지매자공고 46
제 673 호 : 품질관리등급의표시금지처분 48
제 674 호 :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공람공고 49
제 675 호 :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공람공고 50
제 683 호 : 관인새교부공고 50
제 685 호 : 제 2 종전기공사영업영정지 51
제 695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변경안공람공고 51
제 697 호 : 회계관제공무원직인책기및개각등특공고 52
제 700 호 : 품질관리등급의표시금지처분 55
제 709 호 : K·S 표시금지처분공고 55
제 719 호 : 품질관리등급의표시금지처분 55

◎ 구 고 시

제 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취소 56
제 1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6
제 1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7

◎ 사업소 고 시

제 18 호 : 하천점용허가 57
제 19 호 : 하천점용허가 57
제 20 호 : 하천의점용허가가 간연장허가 58

◎ 사 령

공 문 시 행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공보 01754-174

(731-6111)

'89.8.17.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관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96 조 및 동시행명 제 114 조에 의거 관리전환 코저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소요회 당기관에서는 '89. 9. 6 일까지 우리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기일까지 요청이 없을시 소요가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 대상품목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비고
3610-237-2255	전자복사기	제록스 X-3870	대	1	노후화	'85년 취득

끝.

서울특별시

(공보관전결)

수신처: 서과 1-70, 서구 1-22, 서사* 56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8.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김삼준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496 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민학교(북부)중 "62 서울상천국민학교"란 다음에 "63서울 창경국민학교 도봉구 쌍문동 69-3"란을 국민학교(강동)중 "46 서울세문국민학교"란 다음에 "47 서울석촌국민학교 송파구 석촌동 267"란을 각각 신설하고, 국민학교(중부)중 "24 서울 창경국민학교 종로구 연건동 275"란을 삭제하며, 중학교(강동)중 9석촌중학교의 위치란을 "송파구 석촌동 267"에서 "송파구 가락지구 126 블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고건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497 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 10 호의 재산관리원란 다음에 교통교육지도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교육지도관	6급 상당	어린이교통공원운영 및 교통안전지도교육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교통안전지도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통안전지도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교통안전지도분야 근무경력 8년이상인 자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한강수상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9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498호

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한강수상이용시설"을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로 한다.

제 1 조중 "수상이용시설"을 "시민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이라한다)로 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상이용시설

- 가. 보트, 요트, 돛단배
- 나. 동력보트와 수상스키장비
- 다. 선박계류장
- 라. 인명구조선
- 마. 기타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 바. 가목 내지 마목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체육시설

- 가. 수영장 및 수영장안의 물라스케이팅장, 빙상스케이팅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 나.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야구장, 정구장, 배드민턴장, 톨라스케이팅

장 및 빙상스케이팅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3. 낚시시설

- 가. 낚시배
- 나. 한강변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낚시물 위한 시설

제 3 조의 제목 및 본문,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중 "수상이용시설"을 각각 "이용시설"로 한다.

제 4 조의 2 제 1 항, 제 3 항중 "수상이용시설"을 "이용시설"로 하고, 동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소득층 시민·근로청소년으로서 여가선용이나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시민의 건전생활 육성을 위하여 무로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 5 조, 제 6 조 제 2 항, 제 3 항, 제 7 조 제 1 항, 제 8 조 본문 및 동조 제 2 호중 "수상이용시설"을 각각 "이용시설"로 한다.

제 9 조중 "제 4 조, 제 7 조 및 제 8 조"를 "제 4 조, 제 5 조, 제 7 조 및 제 8 조"로 하고, "한강관리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515 호

서울특별시주태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 (합동재개발)중 개정지침

서울특별시 주태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 (합동재개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9. 8.

서울특별시장

제 3 조의 제목 "권한의 내부위임"을 "위임업무의 처리"로 하고, 동조중 제 1 항 및 제 2 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 3 항중 "내부위임된"을 "구청장은 위임된"으로 하여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 6 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시장이 결정한다"를 "다음 각호 1 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 6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제 22 조제 1 항, 제 23 조제 1 항, 제 23 조제 2 항 제 12 호, 제 25 조제 1 항, 제 46 조제 1 항, 제 47 조, 제 51 조 및 제 65 조 제 1 항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본문중 "법제 5 조 및 경제 5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한다.

제 19 조제 2 항중 "5 개사 이상의 해당

사업자에게 신문공고 또는 우편으로 사업개요 입찰방법등을 알리어 응찰토록 하여야 한다"를 "사업개요, 입찰방법등을 입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우편으로 알리어 응찰토록 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5 개사이 상에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의기실시한 입찰결과"를 "파라"로 한다.

제 22 조 제 1 항중 "영제 56 조 제 3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와 동조중 제 3 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4 항중 "제 3 항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을 "제 1 항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지정고시한"으로, 동조 제 5 항중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23 조 제 2 항 본문중 "정관의 내용중 주요 조항의"를 "정관에 정할 사항중 주요내용의"로, 동조제 2 항 제 2 호중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서 규정하는"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으로, 동조 제 2 항 제 9 호중 "인가일후"를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후"로 하고, 동조제 2 항중 제 3 호 및 제 11 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합설립위원회는 구역내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하여야 한다.

1. 구역내 세입자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동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중 당해구역 합동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있는날 현재 당해구역 안에서 3월이상 주민등록등재 거주하는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2인 이상의 세대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건물이거나 한다)의 세입자는 제1호 규정의 주거대책비와 제3호 규정에 따라 건립된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중 택일할 수 있다.

3. 조합은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입주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방법을 다음방법중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가. 조합이 건립하여 관리처분계획으로 관할구청장에게 처분하는 방법

나. 조합은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면적(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대부리시설등의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으로 관

할구청장에게 분양지 또는 환지로 지정하는 방법

제24조 제7호중 "결거되는 조합원"을 "결거되는자"로 하고, 동조 제2호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계획)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하되 가구당 주택규모는 획일성을 피하고 규모별로 다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국민주택규모의 건립가구수) 건립되는 주택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이하)의 건립가구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제23조제3항제3호 가목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건립가구수의 60%이상, 분양예정대상 조합원수 및 제23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희망하는 세입자가구수 이상 건립하여야 한다.

나. 제23조 제3항제3호 나목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건립가구수의 60%이상 분양예정대상 조합원수 이상 건립하여야 한다.

4. (주택의 가구당 규모)주택의 가구당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115

해야 하므로, 제 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중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3 제이상 33 제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대상 세입자의 세대별 구성원의수,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공공시설의 시행계획) 공공시설의 설치는 시설별 관계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 6조제 1호 내지 제 3호 및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투자비 산출근거, 공공부담이 필요한 사유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8.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건설계획) 사업시행으로 이루어지는 세입자중 제 23 조제 3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임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23 조 제 3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제 3항중 "토지등의 소유자" 문 "주민"으로 "제 26 조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시 신청구역내 토지면적, 토지소유자 총수,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90 %"를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

하는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90 %"로 하고 동조 제 4항중 "제 31 조 및 제 33 조 내지"를 삭제한다.

제 25 조의 2와 제 25 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5 조의 2 (토목심의 등) ①조합 설립위원회는 제 25 조의 3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권 사업시행 구역에 대하여 판할구청장의 토목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 1항 규정에 의한 토목심의를 사업시행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규정의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는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은 당해 구역의 사업계획 결정고시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토목심의를 위한 구비서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지침중 관련내용을 준용한다.

제 25 조의 3 (건축심의등) ①조합설립 위원회는 제 26 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건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 44 조의 2 규정에 따른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 23 조 제 3 항 제 2 호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 (별지 제 7-2 호 서식) 및 제 27 조 제 15 호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와 임대주택건립부지 확보계획 및 산출근거 (제 23 조 제 3 항 제 3 호 나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양호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제 3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에 제 3 호의 2 와 동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의 자격과 신청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3 의 2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

⑤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자가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도 제 1 항과 같다. 이 경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변경과 관련된 서류와 변경, 중지 또는 폐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제 3 호 및 제 15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 26 조 제 2 항 제 3 호 규정의 참여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 7-1 호 서

식에 의하며, 제 26 조 제 2 항 제 3 호의 2 규정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는 별지 제 7-2 호 서식에 의한다.

15. 제 26 조 제 3 항 제 3 호 규정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의 자격과 신청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부허가건물 확인원) 등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한다.

제 29 조에 제 4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 2. 영구임대주택건립계획의 타당성과 입주대상세입자자격의 적합성

제 31 조 및 제 32 조를 삭제한다.

제 33 조 제 1 항중 "제 3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조건에 대한" 을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때에는 협의조건에 대한" 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인간신문 1 개지로 하고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청구에 의거" 를 "인간신문에 1 회이상 공고하고,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으로 한다.

제 35 조 제 6 항 제 1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 26 조 제 1 항 및 제 2 항 규정의 서류사본 1 부

제 38 조 제 3 항중 "제 23 조 제 2 항 제 3 호 규정에 의한 참여조합원 자격

이"를" 제 23 조 제 3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임주자격아
로 한다.

제 39 조 제 6 항중 "서울특별시 무허가
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 2 조의 규정"을" 서울
특별시 가허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39 조 제 7 항중 "시장(관할구청장)
을" 관할구청장"으로, 제 75 조제 1
항, 제 77 조제 4 항 및 제 81 조중
"서울특별시시장(관할구청장)"을
"관할구청장"으로 한다.

제 41 조 제 3 항중 "서울특별시 재구
회제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택개발
재개발지구내 시유지관리 및 처분
업무 취급요령"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 46 조 제 1 항중 "법제 65 조의 2"를
"제 6 조제 1 호내지 제 3 호의"로
한다.

제 4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9 조 (용자) ①시장이 한국주택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자금의 용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상) 용자대상은 법제 41
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서 정한 분양대상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규모의 주택을 분양 받
는자 이어야 한다.

2. (방법) 조합의 일반신청에
의하여 대상심사후 기성급과 준
공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3. (신청절차등) 조합은 별지제
44 호서식에 의한 주택개발재발
사업주택건립자금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합
원으로부터 신청서등을 받은 때
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
지 제 45 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
택자금배정요구서를 시장에게 제
출한다.

4. (담보의 취득) 구청장은 국
민주택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 27 조규정에 의거 담보취득후
융자하여야 한다.

5. (대환) 구청장은 국민주택기
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 36 조에
의거 법제 48 조 규정에 의한 분
양처분후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등기시 용자금을 제 1 호 규
정의 용자대상자 앞으로 대환처
리 하여야 하며, 제 2 호 규정의
준공급은 대환처리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대환의 절차등)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 5 호 규정에 의한
대환요청 및 준공급 지급을 위
한 예산요청서 다음 각목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대환대상 차주명세서 (별지제
46 호 서식) 2 부
- 나. 준공검사필증 사본 3 부

다. 평형별 건축물 관리대장 각 2부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조서(별지 제 47호 서식) 2부

마.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2부

㉔ 국민주택 자금 융자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칙과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비의제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2 조 중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 2조에 해당되는”을 “서울특별시 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54 조 제 1 항 중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 2조의 범위내 해당되어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 56 조 제 1 항 제 5 호 중 “2 호 또는 3 호에”를 “2 호내지 3 호 규정의 하나에”로 동조 제 2 항 중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 2 조의 범위내 해당되는”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으로 동조 제 3 항 중 “제 1 항 2 호 및 5 호”를 “제 1 항 제 2 호 및 제 5 호(당해토지가 제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로 “합동개발을 위한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전”을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으로 하고 동조 제 1 항에 제 2 호의 2 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 소유한 자로서 당해토지가 구역지정고시일전에 분할권 1필지 토지이며, 그 1필지 토지의 규모가 40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경우

제 58 조 제 5 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1 항 제 2 호에 단서와 동조 제 1 항에 제 2 호의 2 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한하여 조합정관으로 평형배정기준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기준가에 대해 순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의 2.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의 2에 해당하는 분양대상자에게는 구역내 건립되는 분양주택중 최소평형의 주택을 분양한다.

제 59 조 중 제 2 항내지 제 4 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1 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 60 조 중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를 “제 61 조 제 1 항 규정의 일반분양주택을 대상으로”로 한다.

제 61 조 제 2 항 중 “10 가구 이상인 때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를 “20 가구 이상인 때에는”

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 10 가구"를 " 20 가구"로 한다.

제 62 조제 1 항중 " 5%"를 " 2%"로, 동조 제 3 항중 " 10 가구"를 " 20 가구"로 하고,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시설의 규모 2%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62 조의 2 와 제 62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2 조 2 (임대주택의 처분등) ① 제 23 조제 3 항제 1 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전입된 새입자입주용 임대주택은 판할구청장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의 처분가격은 서울특별시개발아파트분양가격에 의한다.

③ 처분가격의 납부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8 조의 기준에 의거 제 61 조 일반분양자와 납부예에 의한다.

④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입주권의 교부, 처분계약서의 작성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서의 관리이관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사장은 입주자정보, 보증금수납, 전산처리예외의 한 입주자관리 및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

행하여야 한다.

제 62 조의 3 (임대주택전입부지의 한지계획등) ① 제 23 조제 3 항제 3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전입부지를 확보하는 때에는 이를 판할구청장에게 환지 또는 분양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환지 또는 분양지내 국공유지는 관리청으로부터의 매입가격으로 청산하고, 사유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③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사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또는 분양지로 지정될 때에는 임대주택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66 조제 2 항중 "일간신문 1 개지"로 "일간신문에 1 회이상 광고"로 한다.

제 67 조제 3 항에 제 5 호의 2 와 제 5 호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 2, 임대주택처분조서

5 의 3, 환지에 청지 지정서

제 68 조에 제 6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 2, 제 67 조제 3 항제 5 호의 2 임대주택처분조서는 별지 37-2 호 서식에 의한다.

제 70 조중 제 5 호를 삭제한다.

제 73 조 제 5 항중 "제 3 항 및 제 4 항 이외에"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장 및 기타"로 한다.

제 74 조제 3 항중 "건설부장관"을 "시장(주택기획과장참조)"로 한다.

제 77조 제 8항중 “조합은” 다음에 “지적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를 삽입하고, “도시정비과장” 을 “지정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영구임대주택전력에 따른 경과 조치) 89.4.24 이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었거나, 89.4.30이전 당해지구 사업계획결정고시내용 및 개정전 지침과 건축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건축심의가 신청된 지구는 영구임대주택전립과 관련된 제 23 조제 2 항제 3 호, 제 24 조제 3 호, 제 24 조제 4 호, 제 26 조제 3 항제 3 호, 제 38 조제 3 항, 제 59 조 및 제 70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며, 제 23 조제 3 항, 제 24 조제 8 호, 제 25 조의 3 제 2 항, 제 26 조제 2 항제 3 호의 2 제 29 조제 4 호의 2 및 제 67 조제 3 항제 5 호의 2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주택의 가구당 규모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가 신청된 지구의 분양주택규모는 제 24 조 제 4 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보류시설 규모의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제 65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거나 인가된 정관에 개정전 지침의 내용으로 보류시설의 규모가 규정된 지구는 제 62 조제 1 항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공유지분 취득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구역지정 고시된 지구는 제 56 조제 3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지분취득일은 당해구역의 합동채권발을 위한 사업계획결정고시일이 전으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 16 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 5 호, 제 7-2 호, 제 8 호, 제 17 호, 제 21 호, 제 22 호, 제 23 호, 제 32 호, 및 제 4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37-2 호, 제 44 호, 제 44-2 호, 제 44-3 호, 제 44-4 호, 제 44-5 호, 제 44-6 호, 제 44-7 호, 제 45 호, 제 45-2 호, 제 46 호 및 제 4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 5 호서식]		주택개발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장물등의 철거 또는 이전요구허가 토지의형질변경 및 토지의출입동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 조합원	구역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조합(가칭)	
	대표자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조합설립 내역	④ 주소				
	⑤ 사무소소재지				
내역	⑥ 조합원수	⑦ 참여조합원수			
	⑧ 설립목적	구역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			
사업 구역	⑨ 사업명칭	구역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사업			
	⑩ 구역명	주택개발재개발		구역 지구	
	⑪ 위치				
	⑫ 시행면적	㎡ (필지)	⑬ 대상건축물	동	
	⑭ 가구및인구	가구 (인)	⑮ 도시계획	지역	지구
시행 계획	⑯ 시한자	구역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조합(가칭)			
	설계자	⑰ 성명	⑱ 자격		
		⑲ 주소			
시공자	⑳ 성명	㉑ 자격			
	㉒ 주소				
내역 계획	㉓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		㉔ 사업비 천원	
	㉕ 주택건립규모	APT 연립 층 등		가구및복리, 부대시설	
	㉖ 평형별가구수				
	㉗ 건축면적	㎡	㉘ 선폐율	%	
	㉙ 건축연면적	㎡	㉚ 용적율	%	
공공시설설치	㉛ 시설명	㉜ 위치	㉝ 규모	㉞ 비고	
주택구입대 방법			내용		

(이면 계속)

(별지제 5호서식 이면)						
도시개발법 제 36 조대상	건축물	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p>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의 인가,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시개발법 제 36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요구허가, 도시개발법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및 토지의 출입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㉞</p> <p>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p> <p>I.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서류 각 4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정관 2. 조합원명부 3. 참여조합원명부 4.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세입자 명부 5. 사업시행계획서 6. 시행구역 지적현황도 7. 현황전경 및 조감도 사진 8. 토지 및 건축물별 명세서와 개략적인 경가액 9.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자별 명세서 10. 법 제 36 조 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명세서 11. 개수대상 건축물의 명세서와 개수계획 의견서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1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해당도서 15. 대저조성공사 설치도서 16. 공공시설공사 설치도서 <p>II. "1" 관련 증빙서류 각 1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주택건설사업자인 참여조합원의 자격과 선정방법을 증명하는 서류 3.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세입자의 자격과 신청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4. 토지대장 5. 국공유지의 등기부등본 6. 토지, 건축물의 이용상황도 7. 국공유지 점유현황도서 및 가분할속량도 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와 그 증빙서류 						

(별지 제 7-2 호 서식)						
<u>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명부</u>						
(총 판)						
사 업 명	구역 지구 주택개발채개발사업			종세입자	가 구	
임대주택입주대상	가구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가구	비대채	가구	
(입주대상자 조서)						
번호	성 명	주 소	시행지구내 주민등록 등재일 자	부부, 직계 존비속 구성가족수	가옥주명 (조항원번호)	비 고
	주민등록번호					
						(사업계획 결정고시 일자)

(별지 제 8 호 서식)									
<u>구역 지구 주택개발사업 시행계획서</u>									
8.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									
시행방식									
○ 제 23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에 의한 시행					○ 제 23 조 제 3 항 제 3 호 나목에 의한 시행				
○ 건립 가구수 :					○ 건립대상 가구수 :				
○ 평형별 가구수 :					○ 관지 (분양지) 예정면적 :				
					○ 지축토지의 소유별현황 :				
평형									
가구수									
○ 총수 및 동수 :					구분		국공유지 (관리정별)		
					사용지		소계		
					(필거수)				
○ 건축 연면적 :					○ 지축 건축물 현황 :				
○ 기 타 :					○ 기 타 :				

(별지 제 17호 서식)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제 호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지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광고

1. 건설부고시 제 호()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 지구 토지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판제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주택개량재개발 구역 지구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기타 당해지구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공 고 내 용

- 가. 공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0일간)
- 나. 공람장소: 구청 주택과 및 신청인 사무소 (구 동 번지)
- 다. 의견서 제출장소: 구청 주택과
- 라. 인가 신청의 요지
- 1) 사업명칭: 구역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등 필지
 - 3) 시행면적: 제곱미터
 - 4) 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개월
 - 5) 신청인: 구역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 대표
 - 6) 시행계획: (주택건설규모 및 공공시설의 설치내용 요약)

(별지 제 21호 서식)			
주택개발재개발조합설립인가 필증			
			①인가번호
②조합명	구역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조합	
③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사무소소재지			
⑧조합원수		⑨참여조합원수	
⑩사업시행구역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 (구역 지구)			
⑪시행면적		㎡	⑫설립인가년, 월, 일 년 월 일
<p>도시개발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OO구청장 ㉞</p>			
* 인가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시 인가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별지 제 22 호 서식)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서 건축허가서 지장물등의 철거 또는 이전요구허가서 토지의 환경변경 및 토지의 출입등의 허가서		①인가 번호		
시행자	②명칭	구역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조합		
	대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재지				
설계자	⑦성명	⑧자격		
	⑨주소 (전화)			
시공자	⑩성명	⑪자격		
	⑫주소 (전화)			
사업 계획 내역	⑬구역명	주택개발재개발	구역 지구	
	⑭위치			
	⑮시행면적	㎡ (필지)	⑯대상건축물	동
	⑰가구및인	가구 (인)	⑱도시계획	지역 지구 시설
	⑲주택건립도	APT 연립	층	동 가구 및 복리부대시설
	⑳평형별가수			
	㉑건축면적	㎡	㉒천체율	%
	㉓연면적	㎡	㉔용적률	%
	공공시설 설치	㉕시설명	⑵위	⑶기
		⑶비고		
⑳도시계획 발법제 36 조대상	건	철 거 이 전	공	
	속		작	
㉑수용(사 용)대상	토	필 지 수 면 적	건	
	지		물	
㉒사업기간	사업시행인가일		㉓사업비	
연구일대 주택건립	방법	내용		
전원				

(이면계속)

(별지 제 22 호 서식 이면)

이인가·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시행은 인가하며,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시재개발법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물등의 철거 또는 이권요구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 4 조 및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및 토지의 출입등을 허가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 ○ 구청장

㉞

첨부서류

* 사업시행인가의 효력과 조치사항

1.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 7 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0 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 1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4 조)
3.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 일내에 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이외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는 위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 40 조)
4. 조합은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내에 그 사실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 조)

[별지 제 23 호 서식]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조서													
지구명:		구역		지구									
대	위 치	(필지)		용 도	면 적 (㎡)	%	전	용 도	층수	등수	가구수 또는면적		
		토 지	(㎡)		계				아 파트				
	국유지			대 지				상 가					
		시유지		도 로				임대주택					
		사유지		녹 지									
	건축물	계 (동)		공 원				주	평 형	선용 면적	가구수	연면적	
		무허가		공용의청사									
		유허가											
	가 구	계 (가구)							계				
		가옥주											
세입자													
요 시 내 용	표시번호 (일차)		전	건축면적	㎡								
	시행차			건축폐율	%								
	조합원수			건축연면적	㎡								
	설계자			용적율	%								
	시공자												
	시행기간												
가업비 (천원)													

65-22 제 1447 호 시 본 1989.8.19

[별지 제 32 호서식]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 확인가신청서												
신청인	조합명	구역 제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조합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계획	사업명칭	구역 제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 (권리)										
	면적	㎡ [사유지 :]			㎡, 국공유지 :]			㎡]				
	건축물	동 [유효가 :]			동, 무허가 :]			동]				
대상	시행인가일				사업기간	~						
	관리자수	⑩			사업비							
	건축시설	층 아파트 동 가구, 상가 m 층 연립										
관리처분지	시행전후	시행 전				시행 후				비고		
		용도	계	사유지	시유지	국유지	계	사유지	시유지		국유지	
	대지	계										
		소계										
		지										
	도로											
	계											
	계획내역	건축시설	계				아파트 (연립)				상가	
			건축시	대지	건축시	대지	평형별 가구수		건축시	대지		
		분양대상	실면적	면적	실면적	면적	계		실면적	면적		
계												
조합원												
참여조합원												
보류												
채비												
임대주택												

(이면 계속)

[별지 제 42 호서식]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사업명	구역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위치	(필지)	시행자		주택개발재개발조합							
사업시행인가일	(고시번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고시번호)						
관리자수	인 사업비										
분양신청기간	구 분	대 상		신 청							
	분양신청										
	필리신고										
총회개최일자				관리처분계획동의		인 (%)					
공람공고일				공 략 장 소							
공 략 기 간				의결서제출진수							
관 리 처 분 재 회 내 역	토 대 지	시행전후	시 행 전				시 행 후				
			용도	계	사유지	시유지	국유지	계	사유지	시유지	국유지
		지	계								
			소 계								
			아 파트								
	지	공공시설	상 가								
			도 도								
			녹 지								
	건 속 시 설	전 속 시 설	대상	건축시설		아 파트 (연립)				상 가	
				건축시설 면적	대 지 면적	건축시설 면적	평형별가구수		건축시설 면적	건축시설 면적	
				대지면적	계			대지면적	대지면적		
계											
조 합 원											
참 여 조 합 원											
보 류											
비											
		영구임대주택									

(별지 제 44 호 서식)

주택건설자금용자신청서

주택건설 자금을 아래와 같이 용지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개발조합명 : (전화번호 :)
- 2.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 3. 조합원수 : 명
- 4. 주택건설 개요
 - 주택건설 사업자 :
 - 건설위치 :
 - 대지면적 : 평
 - 건축연면적 : 평
 - 건립규모 : (주택형 :) 층 동 세대(호)
 - 총사업비 :
 - 공사기간 :
- 5. 용자신청액 : 금 원
- 6. 첨부서류

- 가. 주택건설자금 용자신청서 (개인별) (별지 제 44-2호 서식) 1부
- 나. 용자신청 내역서 (별지 제 44-3호 서식) 1부
- 다. 용자대상자 명부 (별지 제 44-4호 서식) 1부
- 라. 제개발 조합설립인가 필증 및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각 1부
- 마. 공정확인서 1부

198 년 일 일

신청인 (조합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성명 :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별지 제 44-4 호 서식)

응 자 대 상 자 명 부

연번	동 호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적(㎡)	용적률(%)	주 소	비 고

(별지 제 44-5 호 서식)

채 권 설 정 계 약 서

차용금액 : 원정

담보물건 : 서울특별시

명 및 경형 (공유지분토지 m)

위 금액을 재개발지구내 주택건설비로 용자하고 본 용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담보물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 설정과 보증인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 조 (이율상환 및 연체이자) 용자금의 이율 및 상환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기로 함.

1. 용자금 일금 원에 대하여 연리 % (198 ~ 198) 19년 (198 ~ 200) 복중식 할부 (월단위등차식) 방법으로 상환한다.

2. 제 1 조의 할부금을 예정기일내에 납부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실제상환일까지 제납상환금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가산 납부한다.

제 2 조 (이율변경) 용자금의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상환한다.

제 3 조 (용자금의 지급동의) 용자금은 재개발지구내 주택건설 공사대금으로 시공자에게 지급함을 위임한다.

제 4 조 (용자금의 사용제한) 본 용자금은 재개발지구내 주택건설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이인의 상실) 차주는 다음 경우에 대주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이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제 3 자로 부의 저당물건 또는 차주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거나 기타 채권이 침해 당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을 때

- 2. 본 용자금과 관련된 화재보험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 3. 이자 또는 할부금을 그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저당물에 대하여 대주와 공동하여 또는 대주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가진자가 있게되는 경우
 - 5.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가 정한바나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반하는 경우
 - 6.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 하게된 경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 제 6 조 (양도금지)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주의 사전승인 없이는 그 소유권의 이전 및 물권권의 설정 또는 형태변경등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못함.
- 제 7 조 (화재보험) 건물인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상환기간동안 매년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주는 소정의 보험료를 지정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 8 조 본 용자신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채주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1986 .

차 주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주소 :

성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 44-6 호 서식)

순 위 제 번

근 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무자점 근거당권 설정자 :

이 계약서에 관계된 권리중 전부 확실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구

주택자금동자에따른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점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구

채무자점 근저당권설정자 (이하 "설정자"라 함):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용 체결함.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1. 채권자의 설정자에 대한 재개발지구내 주택건설용자 대출로 인한 채무액과 채권자가 지당지급한 설정자의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설정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설정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이하 "본 채무"라 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하기목록 기재의 물건과 그 부속물건(이하 "저당물건"이라함)에 순위 제 1번채권 최고금액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 저당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추량등이 공부면과 상이하거나, 장래중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부가중속될 물건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함.

3. 설정자는 저당토지상에 장래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동기완료와 동시에 그 건물에 제 2항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겠음.

제 2 조 (변제방법, 이자, 손해금등) 1. 설정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하겠음.

2. 본 채무에 대한 이자율과 지급기 및 지급 방법등은 채권자의 정하는 바에 의함.

3.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년 19%의 율로함.

제 3 조 (담보보존 의무) 1.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락 없이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저당권, 대차권등 각종의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그 현황을 변경하지 아니하겠음.

2. 설정자는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음. 이 경우에 채권자를 위하여 협력을 다하겠음.

제 4 조 (담보 가치의 유지) 설정자는 저당물건이 사변,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겠음.

제 5 조 (보험) 1.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의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체결하기로 하며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 하겠으며 보험계속이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그 절차를 이행하겠음.

2. 전항의 보험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은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겠음.

3. 전항에 의하여 체결 또는 계속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채권자가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전액에 의하여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응하여야도 이의 없겠으며 이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겠음.

제 6 조 (저당물건의 처분) 1. 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응하여야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음.

2.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입대수익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응하여야도 이의 없겠음.

3. 전 2 항의 경우에 설정하는 채권자를 위하여 소요서류의 조인 기타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

제 7 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설정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최고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이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저당물건을 처분하여도 이의 없겠음.

1. 가압류 압류나 정매의 신청 또는 정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금을 채납하지 불응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3.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기함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
4. 설정자가 채권자의 모든 거래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때
5. 다른 채무 때문에 파산, 회생 또는 회생정비, 경쟁회사등의 신청이 있을 때
6. 담보물건을 멸실, 훼손 혹은 가치를 상당히 감소시켰을 때
7.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 44-7 호 서식)

주 담 보 제 공 승 락 서

대할번호 :

198 년 월 일 자 귀구로부터 국민주택자금 융자 (채권설정) 계약 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아래 기록[1]과 같은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금번 다시 아래[2] 기록의 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제공하고 앞에 기록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확약하며 후일을 위하여 이 추가담보 제공 승락서를 작성합니다.

198 년 월 일

채무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명 : ㉞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서울특별시 구

- 아 래 -

1. 198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 호로서
불기 필한 의 필동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2.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별지 제 45 호 서식)

국민주택자금배정요구서

신청 과목		신청금액	원
재개발조합명		조합원수	명

○ 사업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하여야 함)

(단위:천원)

건설 위치	주택 형별	주택 평형 (전용 면적)	호 수 또는 세대수 [A]	호당또는세대당소요자금			총소요 자금 (A×B)	용자 신청 금액	자기 부담 금액
				대지대 및 조성비	건축비 및 복합시설	기타 계 [B]			
총계									
재개발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인가내용		항 목	인가일자	인가번호	인가조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상기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용자금을 지급하고자 국민주택자금을 요구
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기청고 겸사서 (별지 제 45-2 호 서식) 3부
2.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3부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정 장 (직인)

* 호당 또는 세대당 소요자금단의 각항에는 집포등 일반분양 시설의
설치비는 제외할 것

(별지 제 45-2 서식)		기 성 고 검 사 서	
재 개 발 조 합 명			
공 사 명			
시 공 자			
총 공 사 비		원	
성 고 액	결 회 까 지	원 (기성고율:)	
	금 회	원 (기성고율:)	
	제	원 (기성고율:)	
작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기성 검사 년월일			
위와 같이 기성고 검사를 필하였음			
		198 년 원 일	
검사자	시(국) 과	직	성명
입회자	시(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구 청 장	(직 인)

(별지 제 46 호 사식)

대 환 대 상 차 주 영 세 표

(198 회계)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구역명 :

(단위:천원)

입주자 (차주)	주민등록번호	원 주소	대환대상 주 적 (동 호)	대 출 내 역						전 액 유 무		비고
				대출일자	당 본 대출액	상환방법	약 정 납입일	'89 회계		유 . 무	전액금	
								상환기수	대출금잔액			

85-40 제 1447 호 시

보 1989.8.19

[별지 제 47 호서식]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구 역 명		위 치	
조 합 명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 업 기 간	

(단위:㎡)

구 분	세대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세 대 당 면 적			대지면적	비 고
				건 축 면 적				
				건 용	공 용	계		
명칭별								
계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를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서내용과 상이없음을 확인함

198

서울특별시

구 청 장 (직 인)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8.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김상준 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 34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표

지방공무원정원총괄표

종	계	6,914
별정직계		6
비상계회관 (5급상당)		1
속기사 (6급상당)		1
예비군중대장 (6급상당)		1
전산처리사 (7급상당)		2
사진사 (7급상당)		1
전산처리사 (8급상당)		-
3급내지 9급 계		2,019
지방부이사관		1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서기관		13
지방의무기정		8
지방행정사무관		11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지방사서관		22
지방의무기과		7
지방보건기과		2

지방전기기관	1
지방토목기관	1
지방건축기관	4
지방행정주사	642
지방행정주사 또는 열정직 6급상당	2
지방사서	50
지방전산처리사	1
지방건축기사	23
지방전기기사	5
지방기계기사	6
지방토목기사	8
지방약무기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21
지방행정주사보	419
지방사서보	88
지방전산처리사보	5
지방건축기사보	14
지방기계기사보	8
지방전기기사보	14
지방토목기사보	5
지방간호기사보	4
지방보건기사보	87
지방행정정서기	293
지방사서서기	80
지방전산처리원	14
지방건축기원	6
지방토목기원	1
지방전기기원	2
지방기계기원	-
지방보건기원	3
지방보건기원보	1
지방행정정서기보	10
지방사서서기보	27
지방전기기원보	-

기 능 직	4,686
지방통신장 (6 등급)	1
지방전기장 (6 등급)	4
지방기계장 (6 등급)	12
지방기계장 (7 등급)	41
지방전기장 (7 등급)	8
지방통신장 (7 등급)	7
지방기계원 (8 등급)	-
지방전기원 (8 등급)	-
지방기계원 (9 등급)	-
지방조무원 (9 등급)	-
지방통신원 (10 등급)	3
지방전기원 (10 등급)	34
지방기계원 (10 등급)	68
지방운전원 (10 등급)	495
지방교환원 (10 등급)	18
지방농림원 (10 등급)	13
지방보건의원 (10 등급)	12
지방간호조무원 (10 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 (10 등급)	2,909
지방방호원 (10 등급)	1,257
고 용 직	3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85 호

도시계획사업 공원시설(노인정)설치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217(89.5.3)호로 어
린이공원 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시조 제 1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물(노인정)설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공고 제 623(89.7.18)호도
공람 공고 완료하고, 도시공원법 제
6조와 동법시행령 제 2 조 및 도시
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하였기 도
시공원법 제 6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89.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 서초구서초동 685 번지 (서초 제 1 어린이공원)</p> <p>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원시설 (노인정) 설치 시행계획 첨가</p> <p>다. 사업시행내역 : 노인정 81.25㎡ (1층 40.625㎡, 2층 40.625㎡)</p> <p>라. 사업시행자 : 서초 제 3 동 노인정건 립추진위원회 회장 박창운의 1인</p> <p>마. 사업확공및 준공년월일 : 89.8 - 89.12.31</p> <p>바. 기타 :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공원누 적과에 비치도면과 같음</p>	<p>◎서울특별시고시제 393 호</p> <p>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지정</p> <p>문화재 보호법 제 55 조 및 서울특별 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 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무 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 재 보호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p> <p style="text-align: right;">1989.8.16 서울특별시장</p>
지 정 내 역	

종별및지정번호	명 칭	보 유 자 인 정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서울특별시 무형 문화재 제 2 호	서울송절주 (松節酒)	박 아 지 (朴阿只)	여	1911.3.11	강남구 대치동 우성 A.P.T 5 동 1007 호

제 2 호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서

성 명 : 박아지 (朴阿只)

주민등록번호 : 110311-2023811

본 직 : 서울동작구 흑석동 93-159

주 소 : 서울강남구대치동우성아파트 5 동 1007 호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2 호 서울 송절주 (松節酒) 의 보
유자로 인정합니다.

1989.8.1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397 호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 이용시설중 수영장과 수영장안다 롤라스케이트장 및 빙상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의 2 (사용료) ①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물 고시 합니다.

1989

서울특별시장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

시설명	사 용 구 분	사 용 료
수영장	어른 1 회	1,000 원
	청소년 1 회	800
	어린이 1 회	500
롤라스케이트장	어른 1 시간당	450
	청소년 "	400
	어린이 "	300
빙상스케이트장	어른 1 회	900
	청소년 1 회	700
	어린이 1 회	500

주) 어린이 : 만 4 세 이상 12 세 이하의 자
 ○ 청소년 : 만 13 세 이상 18 세 이하의 자
 ○ 어 른 : 어린이, 청소년 및 만 3 세 이하의 자 외의 자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655 호

채 비 지 매 공 고

1989.8.16

서울특별시장

1. 매각재산 (목록은 관계과에서 배부함)

지구명	필지	면적(㎡)	비 고
계	99	48,676.1	
개 포	25	9,534.4	양재, 포이, 파천시 주암동
가 락	67	34,393.3	가락, 오금, 마천문정, 송파, 거여방이동
영 동 1	2	561.6	서초동
영 동 2	2	163.5	논현동
신림추가	1	3,257.1	남현동
압 사	1	297.8	압사동
천 호	1	468.4	둔촌동

2. 매각방법

(가)일반경쟁입찰 (필지별 매각)

(나)필지별 예정가격은 공개하며 입찰전일까지 별도 매각재산목록에 기재공고함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89.8.30. 10:00 - 11:00

4.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서울특별시 입찰실 (서울서도시개발공사 (구경기여고) 강당)

5. 낙찰자 결정방법 :
2개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당시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6. 입찰보증금
필지별 입찰액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을 입찰전일인 '89.8.29. 16:00 까지 한국상업은행 태경로지점에 예치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예치 및 환불방법
가.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예치할 때 본인의 예금통장인 온라인 계좌번호를 예치금 납부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함

- 만일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별도로 개설코자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예치할 때 현장에서 신규로 개설할 수 있음

- 총 입찰보증금액과 예금 잔고를 합산하여 예금과목의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는 예금계좌번호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저축예금, 자유저축등)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하고 발급받은 예치확인증은 입찰등록시 입찰서류와 동봉하여 입찰등록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회입찰에 사용하지 않은 예치확인증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다. 입찰결과 유찰된자의 세치금은 당초 예치할때 기재 본인의 은

라인 계좌에 자동입금 조치되므로 상업은행 계좌인 경우는 입찰일로부터 2일이후, 다른 은행 계좌인 경우는 4일이후 해당은행 본, 지점에서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예상이외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당해 사무처리 소요시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소 인출시일이 지연될 수도 있음

8. 입찰 무효
가. 한국상업은행 태경로지점에서 발행한 '89 제 2 회 체비지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증이 없거나 다른 예치증을 제출할 때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때

다. 1개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때

마.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9.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한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까지 단서가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시에 계속 조치함

10.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일괄 대체함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 1)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2) 위 기간 경과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60일을 제한한 일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동.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시는 그 계약을 해약 조치하고 계약보증금은 당시에 귀속됨

11. 시장용지 입찰자격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을 운영할수 있는 법인 또는 잔금납부전까지 위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자

12. 시장용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함

나. 낙찰자는 먼저 당사가 정한 시장용지 매매계약(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조항에 의거 본 계약을 체결함

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계약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당시에 귀속함

라. 낙찰자는 낙찰액의 2할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의 별도의 금액을 시장시설 보증금으로 잔금 납부전

일까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시청(공제과), 구청, 동사무소에 게시함

나. 해자공고한 재산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인할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킴

다. 토지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람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겸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시가 지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제과(전화 731-6266-9)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673 호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정지처분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13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장 품질관리 등급에 대한 표시정지 처분하고 이를 공고한다.

1989.8

서울특별시장

5

1. 사업공장명: 동양 벨레콤
 2. 대표자: 백석재
 3.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촌동642-7
 4. 사업등급 및 사업현호: 2급등급, B과 2-020
 5. 사업상품: 안되나 (TV 수신용(목외))
 6. 표시정지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처분사유: 제품 검사기준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674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역 승인한 다음 도시 계획상의 관악산 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

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제서류를 공람 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다.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989. 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개요

사업기행지	면적(㎡)	사업의종류및명칭	규모	결정고시	지적고시
신림동 210-1	465	공원면역시설설치	주차장확장	건고 594	서고 917
210-4	325		"	(87.11.20)	(87.12.22)
210-6	285		"		
삼 17-2	5,437		"		
삼 17-5	460		"		
삼 17-6	71		"		
812-1	830		야유회장		
204	138		"		
204-4	88		"		
202	882		"		

나. 사업의시행자: 관악구청장
 다.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행락
 라. 위치도및 계획 평면도: 생략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바. 공람장소: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675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켜 승인할 다음 도시계획시설 관할상 자영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관제서류 공람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제도서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의결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989. 8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면적	사업의종류및명칭	규모	결정고시	지적고시
신림동 211 805	142㎡ 273	공 원 시 설	도로확장 (6 m 10 m 확장)	경고제 344호 (89.6.29)	서고제 336호 (89.7.6)
218-3	12				
812-1	830				
219-3	57				
812-10	623				
계	940				

나. 사업의 시행청 : 관악구청
 다. 사업의시공자 : 주식회사 건영
 라.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마. 위치도및 계획평면도 : 생략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사. 공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관리사업소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 2 조, 제 4 조 및 제 8 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 조,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동규정 제 9 조 및 동규칙 제 8 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8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683 호

관 인 재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 한강공

1. 사용개시일자 : 1989.8.10
 2. 승인및 재기관인내역 :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강동공원관리사업소장의

인 영	제	기	인	제	교	부	인
							

공인영 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의인 및 제인

◎서울특별시공고제 685 호

제 2 종전기공사영업업정지

정지공사업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다음

과 같이 영업정지하고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89. 8.
서울특별시장

(다 음)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처 분 사 항	사 유
116	조흥기전산업	더동 27-208 구로동 604-1	조용환	소재지무단이전	영업정지 2월 (89.8.12-10.11)
1115	덕성계장공사	구로동 167	이영순	소재지무단이전	"
1175	삼진기전	개봉동 170-33	정태수	· 기술자미선임 · 보유장비미비치	"
1215	서기전설	시흥동 984 (23 동 210 호)	정중희	소재지무단이전	"

◎서울특별시공고제 69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변경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 16 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 14 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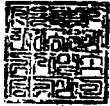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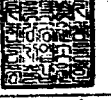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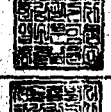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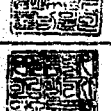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8. 15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 1989. 8.19부터 14일간 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변경안											
순번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중	점	비	고
1	신설	소로	3류	6	37	개봉동 312-1	개봉동 312-3	개봉동 312-3	개봉동 312-3	기존 4m (구획정리지구) - 6m 확장	
2	기정 변경	소로	3류	5	10	중동 189-71	중동 189-71	중동 189-71	중동 189-71		
		소로	3류	6	10	중동 189-72	중동 189-72	중동 189-72	중동 198-57	변경	
3	기정 변경	소로	3류	6	70	은수동 22-5	은수동 22-5	은수동 22-5	은수동 20-4		
		소로	3류	6	75	은수동 23-7	은수동 23-7	은수동 23-7	은수동 20-4	변경	
4	기정 변경	소로	2류	8	1,500	신도림동 271-115	신도림동 271-115	신도림동 271-115	신도림동 286-4		도로및하수도
		소로	2류	10.4-10.5	112	구로동 614-33	구로동 614-33	구로동 614-33	구로동 614-10호	목원변경	
5	기정 변경	소로	2류	8	400	신도림동 438-1	신도림동 438-1	신도림동 438-1	신도림동 419-4		
		소로	2류	8	400	"	"	"	"	각각전제	
○ 학 교											
구	분	시	선	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	정	학	교	독	산	동산 8번지일대	27,695				
		학	교	"	"	"	30,519	독산동산 12-2번지 (2,823) 수용재결			
◎서울특별시공고제 697 호 이틀 공고합니다.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및개각등록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제 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등록 및 폐기하고 동규칙 제 11조에 의거 1. 직인등록조서 : 별첨 2. 직인 폐기조서 : 별첨 * 사용개시일 : 1989. 8.11											

직인 등록 현황

관 서 명	회 계 직 명	직 인 규 격	직 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 사업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 사업소 경리관인	2cm 장방형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정수관인	"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본임지출원인	"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본임경리관인	"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물품관리관인	"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본임물품출납원인	1.8cm장방형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	
"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 물품출납원인	"	

직 인 폐 기 현 황		
관 서 명	회 계 직 명	폐 기 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경비관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징수관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본임지출원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본임경비관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물품관리관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본임폐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책임폐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수입리출납원인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고제 700 호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정지처분

공산물 품질관리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장품질관리 등급에 대한 표시정지 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89. 8. 19
서울특별시장

- 1. 사정공장명 : 오성사
- 2. 대표자 : 강은태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890-391
- 4. 사정등급 및 사정번호 : 2 갑, G가 2-285
- 5. 사정상품 : 공책
- 6. 표시정지기간 : 공고일부터 3개월
- 7. 처분사유 : 제품검사 기준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709 호

K. S 표시 정지 처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 정지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89. 8.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업체명 : 청우공업㈜
- 2. 대표이사 : 정영석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명동 3가 96-1
- 4. 규격번호 : KSB 7501
- 5. 규격명 : 소형무우트럼프
- 6. 종류, 등급 : 30 %이하
- 7. 표시정지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8. 처분사유 : K. S 규격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719 호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정지처분

공산물 품질관리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장품질관리등급에 대한 표시정지 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89. 8. 19
서울특별시장

- 1. 사정공장명 : 삼성화스나 주식회사
- 2. 대표자 : 유한국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60-48
- 4. 사정등급 및 사정번호 : 2 갑, G가 2-71
- 5. 사정상품 : 지퍼
- 6. 표시정지기간 : 공고일부터 3개월
- 7. 처분사유 : 제품검사 기준미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구 고 시</div>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8. 강 동 구 청 장
◎강남구고시제 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고시 제 213 호에 의거 사업 승인된 민영주택 건설사업승인을 일 부 직권 취소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다 --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 인 일부 취소 2. 사업주체 : 자유건설 김 동 권
구 분	당 초 사 업 승 인	승 인 일 부 취 소 사 항
위 치	철호동 287-9	차 동
대지 면적	4,539 ㎡	"
용 도	연립주택	"
규 모	3층 4동 90세대의 부대시설	미착공분 3층 2동 45세대
건축연면적	6,781.62 ㎡	" 3,384.33 ㎡
4. 사업시행기간 : '88.3-'89.5 첨부 : 설계도서 (생략)		
◎강동구고시제 1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 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고 동법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8. 14 강 동 구 청 장 -- 다 -- 음-- 1. 사업명 : 철호동 ㈜장안개발 주택		조합의 5개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종로구 당수동 100 ㈜장안개발 주택조합의 5개조합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강동구 철호동 237-1의 6필지 나. 대지 면적 : 7,360.0 ㎡ 다. 용 도 : 아파트 라. 규 모 : 14-15층 2동 224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연 면 적 : 20,137.22 ㎡ 4. 사업시행기간 : '89.8-'90.10 첨부 : 설계도서 (생략)

◎성동구고시제 1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8. 4
성 동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근린직장주택조합외 3개주택조합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82-1외 10필지

- 나. 대지면적 : 6,957.025㎡
 다. 건축면적 : 17,391.35㎡
 라. 구 모 : 아파트 11층 2동 158세대
 유치원 및 기타 부대부리시설
 1. 사업시행기간 : 1989. 8-1990.12.31

시 업 소 고 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 18호

하 천 점 용 허 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5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 8.16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89.8. 16	서울 영등포구	하천	1,163.54㎡ (여의도)	유선장 설 치	'89.5.30 -9.10	인천시북구십정동	유병언
	여의도동 85-1번 지선 및 송과구 잠실동 19번지 선(한강)					558-10	
						대리인 서울강서구등촌동 515-44	한형주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 19호

하 천 점 용 허 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5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 8. 16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범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 전채를 처함.	도시개발과	지방토목기사보
정광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호에 의거 전채에 처함.	종합운동장 관 리사집소	지방건축기사보
박용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3호에 의거 전채에 처함.	종합건설본부	.

◎ 1989년 8월 5일자 7급보건직공무원추서 명계 32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형우	지방보건의사에 추서함.	시립정신병원	지방보건의사보

◎ 1989년 8월 10일자 의무직군공무원계급부여 명계 328호

성명	발령직급	발령호봉	원부서	직급
신기준	지방의무부기감		시립동부병원	지방의사
이원근	"		시립아동병원	"
최환상	"		시립정신병원	"
김영상	"		시립서대문병원	"
문인봉	지방의무기정		종로구보건소	"
김병희	"		중구보건소	"
주해란	"		용산구보건소	"
조인순	"		성동구보건소	"
조철행	"		동대문구보건소	"
이용근	"		중랑구보건소	"
박노진	"		성북구보건소	"
황택룡	"		도봉구보건소	"
서정숙	"		노원구보건소	"
김중삼	"		은평구보건소	"
이병익	"		서대문구보건소	"
백은석	"		마포구보건소	"
지우창	"		양천구보건소	"
양일연	"		강서구보건소	"
김형숙	"		구로구보건소	"

성 명	발령 직급	발령호봉	원 부 서	직 급
맹시선	지방의무기장		영등포구보건소	지방의사
권정숙	"		동작구보건소	"
김성식	"		관악구보건소	"
김소자	"		서초구보건소	"
손정신	"		강남구보건소	"
이용욱	"		송파구보건소	"
이은호	"		강동구보건소	"
나문희	지방의무기과		종로구보건소	"
김영숙	"		중구보건소	"
김선희	"		용산구보건소	"
배승진	"		성동구보건소	"
강순옥	"		동대문구보건소	"
이경열	"		중랑구보건소	"
김인숙	"		성북구보건소	"
최은주	"		도봉구보건소	"
유명자	"		노원구보건소	"
이양숙	"		은평구보건소	"
윤희숙	"		서대문구보건소	"
박승기	"		마포구보건소	"
김재복	"		양천구보건소	"
윤현숙	"		강서구보건소	"
성영자	"		구로구보건소	"
윤혜성	"		영등포구보건소	"
서경숙	"		동작구보건소	"
오세연	"		관악구보건소	"
윤길자	"		서초구보건소	"
조화숙	"		강남구보건소	"
이성세	"		송파구보건소	"
이호급	지방의무기과시보		강동구보건소	지방의사시보
서태영	지방약무기과	12호봉	의약과	지방약사
연정숙	"		시립동부병원	"
박건	"		시립아동병원	"
이병수	"		시립정신병원	"
정동연	"		시립서대문병원	"

성 명	발령 직급	발령호봉	원 부 서	직 급
임소연	지방약무기사	5호봉	의 약 과	지 방 약 사
윤진규	"	10호봉	"	"
강성홍	"	7호봉	"	"
고승하	지방약무기사보	7호봉	"	"
유성자	지방간호기사	10호봉	"	지 방 간 호 사
홍승진	"		시립동부병원	"
최정자	"		시립아동병원	"
이춘애	"		시립정신병원	"
조애형	"		시립서대문병원	"
하명주	지방간호기사	10호봉	의 약 과	"
허 원	"	9호봉	"	"
정경자	"	13호봉	내 무 국	"
홍정순	지방간호기사보	8호봉	보건위성과	"
진경희	"	12호봉	"	"
김종란	"	13호봉	의 약 과	"
오명페	"	11호봉	"	"
김순화	"	9호봉	"	"
유귀덕	"		시립아동상담소	"
배윤희	"	11호봉	시립부녀보호소	"
고순애	"	10호봉	"	"
김연화	지방간호기원	7호봉	의 약 과	지 방 간 호 사
박영애	"		시립아동상담소	"
강복영	"	9호봉	내 무 국	"
윤귀매	"	3호봉	"	"
박경희	"	6호봉	"	"

◎ 1989년 8월 9일자

의료직공무원신규임용

령제 330 호

성 명	발령 부 서	발령 직 위	발령 직 급	비 고
이 호 급	강동구보건소	보건지도 과 장 (7 호 봉)	지방의사 시 보	신 규

별정직 공무원면직					령제 331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위	직급	
박위민	원예 외하여 그직을 면함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	지방별정직 3급 상당	
이기성	원예 외하여 그직을 면함	"	무대공연담당 관	지방별정직 4급 상당	
◎ 1989년 8월 14일자 5급공무원전입					령제 332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위	직급	
김윤남	서울특별시 견입을 명함 양천구 근무를 명함.	남원군	기획실장	지방별정사무관	
◎ 1989년 8월 11일자 5급의무직공무원전보					령제 333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직위	발령직급	원부서	직급
김영숙	도봉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중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김선희	마포구보건소	"		용산구보건소	"
김인숙	영등포구보건소	"		성북구보건소	"
윤혜숙	성북구보건소	"		서대문구보건소	"
박슬기	중구보건소	"		마포구보건소	"
오세연	서대문구보건소	"		관악구보건소	"
윤혜성	관악구보건소	"		영등포구보건소	"
최은주	용산구보건소	"		도봉구보건소	"
별정직 공무원면직					령제 334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종섭	원예 외하여 그직을 면함.	총무과	별정직 6급상당		
◎ 1989년 8월 14일자 6급이하공무원전보및파견					령제 33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신금식	총무과	총로구	지방행정주사		
유제현	인사과	심사분석담당관	"		
신승훈	"	강동구	"		
김세옥	"	사회지도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손기배	동부건설사업소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하태관	영등포구	"	"
정순영	성대문구	"	"
홍순익	북부수도관리사업소	관악구	지방행정서기보
신금식	등대문구	구로구	"
윤장희	교동기회과 파견 ('89.8.14 ~ '90.8.13)	"	지방행정주사보

간 호 직 공 무 원 파 견

명계 336 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방영이	시립대학교 파견 ('89.8.14 - 별도지시시까지)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원
현종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 ('89.8.14 - 별도지시시까지)	"	"
최윤영	아동병원 파견 ('89.8.14 - 별도지시시까지)	성북구	"

◎ 1989년 8월 21일자

6 급 이하 기계직 공무원 파견 및 해제

명계 337 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윤종원	서울특별시 경찰국 파견 해제	운수 2 과	기계기사보
노병문	서울특별시 경찰국 파견 ('89.8.21 ~ '90.1.31)	"	지방기계기사

◎ 1989년 8월 17일자

7 급 공 무 원 휴 직

명계 338 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지장훈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을 명함.	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서울특별시청

◎ 1989년 8월 16일자 인사발령령 제 339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장혁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89.8.16 대 두 명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89.8.16 서울특별시장

공무국의 여행명령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 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공무원 교육원 인사과 내무국	부이사관	김두기	영국, 프랑스	'89.8.29- 9.9 (12일간)	사비	공무원교육원 서 기관반 해외연수
	행정사무관 서기관 (명단별칭)	국윤호 정태부 외 9명				
공무원 교육원 행정과 동대문구	서기관	천남수	일본, 태만	'89.8.28- 9.8	사비	공무원교육원 동 장반 해외연수
	행정사무관 별정직 5급 (명단별칭)	최영복 장준갑 외 9명				

공무국의 여행명령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 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서대문구	지방 부이사관	김동일	일본	'89.8.4- 8.7 (4일간)	서대문 구청 부담	한일친선협회 자 매도시 방문
	지방 행정주사	송인창				

공무국외여행명령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도봉구	행정사무관	김호진	대한, 동 중, 싱가포르	'89.8.28 - 9. 2 (6일간)	도봉 구청	도봉구 외국도시 행정 비교시찰
	행정주사	한동철				
	"	이성환				
	"	신정환				
	"	김진태				
	행정주사보	안중섭				
	건축기사	전영진				
토목기사	이학래					
서울특별시장						